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 납세자에게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(안 제16조의2)
 -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함
 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1장당 150원
 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1장당 300원
- 감면제외대상 지방세법 인용조항 변경(안 제18조)
 - 감면제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법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
- 경상북도 세정과-2837(11.2.24) :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2010년 12월 27일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한 것으로
- 시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이사로 인한 고지서 미수취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세금납부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